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에 대한 고찰*

배 병 호**

차 례

- I. 머리말
- II.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을 위한 기존의 논의
- III.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과 배상범위
- IV.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 V. 맺음말

[국문초록]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시기인 1989년, 1997년 및 2000년 에 국회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배분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였다.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위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자 제18대 대선공약에 환경책임법 제정이 포함되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자 환경부는 2013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이완영의원이 2013.7.30.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심의하던 중, 김상민 의원이 2013.11.28.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한정애 의원이 2014.2.7. ‘환경책임법제정법률안’을 각 대표발의하여 논의하다가 위 3법안을 통합하여 환경책임법 대안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하였다.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 2015.12.19. 한국환경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토론자들의 고견과 제정된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수정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는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 원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배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준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와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환경책임보험제도는 2016.7.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독일에서 유사한 내용의 환경책임법이 시행된 후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의 소송으로 해결되는 것보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사이 조정 등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I. 머리말

첨단과학기술시대에도 안전사고의 위험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복잡성과 총체적인 연결성 및 예측의 한계 등으로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환경오염사고도 마찬가지다. 2007년의 대안 원유 유출사고나 2012년의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과 같은 대형 환경오염사고¹⁾를 겪으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사고의 예방과 피해구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2022년까지 모든 원자료를 가동중지하고 그에 대한 대안 개발 및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겠다는 독일의 결정²⁾은 환경안전과 복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오염피해는 공장의 가동을 통한 생산 활동과 고용 및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인 개인이 배상책임을 증명하기 쉽지 않은 것 외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으로 인한 원성이 적지 않았다. 반면에 엄청난 배상액이 인정되어도, 가해자의 재무 능력이 담보

1)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주요 환경오염사고 사례(1973~2012)는 1973년 전남장성의 시멘트공장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 및 생활환경 피해를 시작으로 하여 2012년의 경북 구미의 화학공장의 불산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 등 33건이나 된다. 강남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인(대안) 검토보고”, 2014.12.12-14년.

2)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한국과 독일의 환경법」, 콘라트 아테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2013. 155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실질적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거액의 피해배상금과 오염처리 비용으로 기업은 도산 위험에 직면하고, 종국적으로 책임이 없는 일반 국민이 낸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총래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법이 적용되나, 환경침해의 원인이 명료하지 않고 그를 입증하는 방법 또한 쉽지 않아 인과관계 입증과 위법성 인정을 완화하는 다양한 이론이 강구되었다.³⁾ 위험책임론의 강조와 전문법 영역의 환경민사책임이론도 그러한 노력의 일종이다.⁴⁾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시기인 1989년, 1997년 및 2000년 에 수차례 국회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배분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률안이 제안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정되지는 못하였다.⁵⁾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결과 환경책임법 제정이 제18대 대선공약에 포함되었다.⁶⁾ 환경책임법 제정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자 환경부는 2013년 상반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공청회⁷⁾ 등을 진행하여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은 의원입법방식을 선택하였다.⁸⁾

이완영의원이 2013.7.30.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⁹⁾의 목적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며, 환경 분야의 권리·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통해 생활

3) 윤흥석, “환경오염의 민사책임에 관한 새로운 동향”, 『재산법연구』 제11권제1호, 1994.62면;

4) 양천수, “전문법의 책임으로서 환경책임과 환경민사책임”, 『환경법연구』 제29권3호, 2007. 262-266면.

5)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12.42면.

6) 함태성,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사법』 제26호, 2013. 45면; 한상운, “환경책임과 환경보험-환경피해구제법안(2013년7월30일 국회발의)을 중심으로”, 『사법』 제26호, 2013. 113면, 각주5).

7) 2013.6.15. 환경부주최로 연세대학교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전경운,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35권2호, 2013. 358면.

8) 김경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69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7.24. 1면.

9)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었다고 한다. 함태성, 앞의 논문, 45면 각주3).

터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위 법안은 2013.12.16.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쳤다. 김상민의원이 2013.11.28. 대표발의한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한정애의원이 2014.2.7. 대표발의한 ‘환경책임법제정법률안’¹⁰⁾이 2014.2.14.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쳤다. 위 3개의 법률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2014.2.17.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진술을 듣고 대상 법률안의 토론을 거쳤다.¹¹⁾ 2014.4.17.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책임법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2014.4.23. 이를 제324회 국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환경책임법 제9조 3항¹²⁾(인과관계 추정 배제조항)의 성안은 각 의원들과 환경부장관의 토론을 통하여 어렵게 이루어졌다.¹³⁾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4.12.31. 법률 제12949호로 제정되어 2016.1.1.부터 시행되고 있다.¹⁴⁾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이 2015.11.30. 국회에서 일부 개정되어,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기존의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 외에 중재제도가 추가되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총 49조로 6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제4장 환경

10) 위 안은 환경피해에 자연환경훼손을 포함하고, 사업자에게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할 의무를 지우고 배상책임한도가 없으며 재무대책을 보험이 아닌 환경책임부담금 징수를 위한 기금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환경책임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4.2. 6-8면.

11) 환경노동위원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대안), 2014.12. 1-2면.

12)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된다.

13) 제324회 국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록(2014년4월23일) 6-14면.

14) 2015.12.30. 시행령이, 그다음날인 12.31.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모두 2016.1.1.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염피해 구제,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새로운 제도 중 하나인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도입 이전의 많은 논의(II),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III), 그리고 환경책임법에서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IV) 등의 순서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을 위한 기존의 논의

2011.3.11.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파손과 그로 인한 심각한 환경피해는 인간의 과학에 대한 신뢰를 재고하도록 하는 경고다. 2015.12.8.자 북경에서의 최악의 스모그 비상사태 소식은 생존 환경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과관계와 위법성 및 책임범위 인정 등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¹⁵⁾ 지구의 기후 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함께 각국은 국내의 환경오염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하고 있다. 우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많은 영향을 준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우리의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 환경법률을 살펴보고 새로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전체구조를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1. 독일의 환경책임법

독일에서는 환경침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법(독일 민법 제823조), 상린관계법(같은 법 제906조), 방어청구권(같은 법 제1004조; 방해배제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민법과 개별 환경법률의 책임규정이 환경책임법의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⁶⁾ 그 중 민사책임에 관한 법률로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과

15) 박규용,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손해배상소송과 잠재적 책임위험의 범위”,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39집, 2012.6.208면.

16) 김현준, “환경책임 및 환경소송의 법체계-한·독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사법」 제26호,

순수한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¹⁷⁾ 및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보호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환경구제법(Umweltrechtsbehelfsgesetz)¹⁸⁾ 등이 중요하다.¹⁹⁾

1990.12.10. 제정되어 1991.1.1.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책임법은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입법 결단의 성격이 강하다. 즉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대형 환경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위험책임원리에 기초한 무과실책임론이 부각되던 중 1986. 11. 스위스 비젤의 샌도즈(Sandoz)사의 화재사고로 라인강이 오염되자 입법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⁰⁾ 미국과 이탈리아의 입법을 많이 참고한 환경책임법은 침해와 손해의 연계를 적용하고, 행위책임과 물질책임을 제외한 시설책임만을 수용하고, 시설물 유형을 96가지 규정한다.²¹⁾ 독일 정부는 입법이유서에서 그 목적으로 배상에 의한 피해자 구제, 환경손해의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생산을 통한 효율축진을 들고 있다.²²⁾ 주요내용으로 ① 책임발생의 요건으로 시설관련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으로 인한 법익침해, 위험책임, 책임을 근거지우는 인과관계, 면책사유 등을 규정한 것, ② 책임의 범위에서 그 상한을 최고 8천5백만 유로로 한정하고²³⁾, ③ 입증부담의 완화로서 인과관계의 추정²⁴⁾, 정보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④ 전보준비와 책임보험 등을 규정한 것을 들

2013.17년.

- 17) 2007.5.10. 제정되어 2007.11.14.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2004.4.30. 제정된 “유럽환경책임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 18) 2001.10.30. 발효한 오르후스협약(Arhus Convention)에서 규정한 환경정보엑세스권, 환경행정 절차참여권, 환경사법엑세스권 중 환경사법엑세스권을 실현한 법률로 2006.12.15. 시행되었다. 김현준, “환경사법엑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환경법연구』 제32권2호, 2010. 134면 이하.
- 19) 1945년 이후 독일 환경법의 발전은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앞의 책, 160-253면 참조.
- 20) 김형석, “민사적 환경책임”, 『서울대학교법학』 제52권제1호, 2011.230면; 오석락, 「독일신환경책임법의 특징과 내용」, (환경문제연구총서 1), 대한변호사협회, 1991. 12면.
- 21) 이르빈 도이취, 김민중역, “독일 환경책임의 이론과 근본원칙”, 『한독법학』, 1991. 33-34면.
- 22) 최광준, “독일환경책임법의 기본구조와 주요내용”, 『재산법연구』 제21권제2호, 2006. 301면.
- 23) 단일한 환경영향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의 경우 생명, 신체, 건강의 침해에 대하여 총액 8천5백만 유로까지, 물건의 손괴에 대하여 총액 8천5백만 유로까지를 한도액으로 한다.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여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일반불법행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아야 한다.
- 24) 환경책임법 제6조 제1항에서 “어떤 배출시설이 개별적 상황에 의거하여 발생한 손해를 야기하기에 적합하다면, 그 손해는 이 배출시설을 통하여 야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배출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되었다면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운영의무들이 준수되었고 운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적합하게 조업되었다고 본다.”고 규정하여 배출시설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수 있다.²⁵⁾

환경책임법은 다른 규정을 통한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18조) 이 법상의 청구권과 독일 민법의 불법행위청구권, 물 관리법 제22조의 청구권, 유전공학법 등과 는 청구권 경합관계이다.²⁶⁾

독일 환경책임법의 성과는 아직 확정할 수 없으나 환경침해분쟁들이 주로 보험에 의해서 해결되므로 법원의 사건은 드물어졌다고 한다.²⁷⁾ 위험의 평가와 보험료산정에 의해 위험의 처리를 보험에 맡김으로써 전보 기능과 예방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의 기업은 환경책임법 시행으로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고, 보험계약의 강제화로 인한 보험회사의 환경관리체제가 도입되어 보험회사를 통한 기업의 직접적인 환경보호태도 유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²⁸⁾

2.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 환경법률

민법의 불법행위체계만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로 인한 민원이 많이 생기자 가해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개별 환경 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5조²⁹⁾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³⁰⁾, 광업

25) 김현준, 주15), 18-22면; 김형석, 앞의 논문, 231-242면; 전경운, 「환경사법론」, 집문당, 2009. 213-216면; 강현호, 「환경국가와 환경법」, 신론사, 2015. 410-411면; 최광준, 앞의 논문, 303-319면.

26) 김현준, 주15), 22면; 김형석, 앞의 논문, 230-231면.

27) 김형석, 앞의 논문, 242면.

28) 서보국, “독일의 환경책임법: 현황, 성과 및 발전방향”, 「환경법과 정책」, 제5권, 강원대학교, 2010. 46면; 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15. 577면.

29) 제5조(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2.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3.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30)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법 제75조³¹⁾, 수산업법 제82조³²⁾,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³³⁾ 등에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그 위험을 더 강하게 인식하여 배상의무자, 배상책임자의 내용, 책임한도액, 책임보험 내지 배상보장계약체결 의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업법과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위와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미흡한 부분은 민법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1991.2.2.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1990.8.1. 법률 제4257호 제정)의 제정이유는 당시 환경보전법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이질적인 분야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날로 다양화, 복잡화해가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므로

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1) 제75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坑水)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鑛煙)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해당 광업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광구의 광업권자(그 광구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조광구에서는 해당 조광권자)
 2.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소멸 당시 그 광구의 광업권자(광업권이 소멸할 때 해당 광업권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그 조광구에서는 해당 조광권자)
- 32) 제82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 선박 또는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3. 해저광구의 개발 등
 - ② 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 33)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각 개별 단행법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관계법률 상호간의 합리적 체계를 정립하여 환경보전시책이 국가전체로서 유기적 연관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는 오염된 환경의 회복과 피해구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 환경오염이 현저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의 영향권별로 환경오염상태를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영향권별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여 환경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그 평가서의 작성시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 환경관계분쟁의 신속한 조정과 피해의 적정한 구제를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³⁴⁾을 규정한 것 등이다.

2011.7.28.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제44조에서 ‘사업장 등’과 ‘사업자’의 요건을 삭제하고 ‘원인자’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이 조항에 대하여 원인자 개념이 종래의 사업장보다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책임주체인 ‘원인자’에 대한 별도의 개념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것과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에 대한 불충분한 정의만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³⁵⁾ 여기에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34) 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사업장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5) 김홍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한계와 극복”, 「사법」 제26호, 2013. 75면.; 전경운,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모색”, 「환경법연구」 제36권1호, 2014. 151-152면.

있는 제7조의 내용³⁶⁾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양 조문의 조화로 해석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³⁷⁾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 규정의 효력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과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³⁸⁾, 판례³⁹⁾는 종전 사업자의 무과실책임규정에 대하여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였다.

3.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 논의와 대강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개정 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무과실책임을 효력 인정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 환경책임법과 같은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한 별도의 법 제정을 주장하였다.⁴⁰⁾ 2013.6. 이후 국회에서의 환경책임법 논의가 활발할 무렵 환경법학회의 학술대회에서 환경책임법 제정시의 고려사항으로 시설책임으로서 무과실책임과 면책규정의 명문화, 인과관계의 입증완화에 대한 규정과 정보청구권 및 열람청구권, 격지손해와 가산적 손해 등 원인자 불명 손해의 차후 과제유보, 손해배상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생태적 손해의 포함, 배상책임액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논의 등이 제기되었다.⁴¹⁾ 2013.7.30. 발의된 이원영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개진되었다.⁴²⁾

위 법의 제정이유는 다수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의 빈발을 감안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실제규정으로 체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통하여 고통을 겪는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36)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7) 이순자, 앞의 책, 553면.

38) 이준서,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79-80면.

39) 대법원 2001.2.9.선고 99다55434판결; 대법원 2008.9.11.선고 2006다50338판결 등.

40) 전경운, 앞의 책, 192-194면.; 김홍균(주35), 82면의 각주22) 참조.

41) 전경운, 앞의 논문, 152-167면.

42) 한상운, “환경책임과 환경보험-환경피해구제법안(2013년7월30일 국회발의)을 중심으로”, 「사법」 제26호, 2013. 113면 이하.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Ⅲ.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과 배상범위

1.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배상법적 의의

(1)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배상책임발생과 배상범위

(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취지

위 법은 2016.1.1.부터 시행되나,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7조는 2016.7.1.부터 시행된다. 환경책임법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의 사업자에게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현재의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과 같이 환경책임보험가입의무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다.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하여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구제급여의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제급여의 지급은 보상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배상책임 한도의 설정, 인과관계추정의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환경오염피해와 적용 대상 및 책임자

이 법의 환경오염피해는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말한다.⁴³⁾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법 제2조 제1호 단서)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제3조)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⁴³⁾ 토양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무과실책임과 중복되므로 개정이 예상된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등 10개 법률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⁴⁴⁾ 환경오염피해에 책임지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이고, 사업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하므로 (법제2조제3호) 환경책임보험가입자와 일치한다.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다) 배상책임의 발생과 면책 등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이고 위험책임이며 결과책임이다. 이러한 위험책임의 인정으로 사업자는 행정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가동을 하였고 가동상의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 정상가동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⁴⁵⁾ 그러나 환경오염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44)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5. 「기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
8.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5) 이순자, 앞의 책, 568면. 김홍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제37권2호, 2015.145면.; 정남철, “새로운 환경책임법제의 도입과 피해자 구제절차의 문제점-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7권3호, 2015.256면.; 한상운, 앞의 논문, 119면.

는 면책된다.(법제6조 단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진도 9의 지진과 지진해일은 천재지변에 해당할 것이다.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사업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법제10조) 원인제공자의 손해발생의 기여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이 되면 그 배상범위도 기여의 정도에 따른 비율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⁴⁶⁾ 다른 사업자의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를 제6조에 따라 배상한 사업자는 해당시설의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가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된 자재·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사업자는 해당 자재·역무의 제공을 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다.(법제11조 제2항) 사업자의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강조하여 결과책임을 지운 것으로 보이나, 배상책임을 이행한 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해당 자재·역무의 제공을 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도급의 사유 및 도급계획,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법제12조제1항)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 미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동조 제4항) 도급인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시설의 무리한 설치와 운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3항)

(라) 배상방법과 배상범위 및 책임한도

환경오염피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나, 배상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법제13조)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오염피해가 동시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의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

46) 한상운, 앞의 논문, 120면.

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법제14조)

구체적인 배상범위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입증방법으로 일반손해배상과 같이 물증과 증언 외에 전문가의 감정도 사용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액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법이 정한 책임한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사업자의 시설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배상 책임한도를 2천억 원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결과 등을 감안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7조) 대통령령은 제4조에서 적용대상시설 별로 10개 군으로 나누고,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을 가군(2,000억원), 나군(1,000억원), 다군(500억원)으로 구분하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 등은 구분 없이 다군 하나로 적용하기도 한다.⁴⁷⁾ 이는 기업의 순기능과 활동을 배려하고 무과실

47) [별표2]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

적용대상 시설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가군	나군	다군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른 2종 또는 3종 사업장의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의 시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의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 사업장의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대상 시설	매립면적 2백만㎡ 이상인 매립시설	1) 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인 매립시설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인 소각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해당 시설 전체
5.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해당 시설 전체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대상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중 총 용량 1만 kL 이상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중 총 용량 1천 kL 이상 1만kL 미만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기준수량의 40배 이상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10만톤 이상인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기준수량의 40배 미만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인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8.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해당 시설 전체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이 표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또는 제3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시설	이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또는 제3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기준의 100배 이상인 시설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기준의 100배 미만인 시설 (합계 용량 1천kL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비고

1.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 내에 위 표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그 사업장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으로 한다.

책임인정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배려라고 할 것이다. 그 기준의 타당성은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위험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유류오염피해와 원자력피해 등에서 책임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입법이나,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한 적절한 보험료가 관건이다.

책임한도의 예외를 두어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피해의 확산방지 등 환경오염피해의 방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제7조 본문 단서) 여기서 과실과 중과실의 구분이 애매하고 과실에 의한 환경오염사고도 다수 발생하므로 과실로 발생한 경우도 무한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자들은 환경책임보험 제도 가입에 따른 보험료 액수의 기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제23조제1항제2호) 그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운영기관은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제23조제4항)

(2) 인과관계의 추정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그 동안의 민사상의 입증책임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2. 동일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내에 위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및 제7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을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및 제7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가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가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나군의 시설로 본다.
4. 나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나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다군의 시설로 본다.
5. 사업장과 연결한 부지에서 배관 등을 연결하여 생산·공급시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은 출하를 위한 저장탱크가 설치된 사업장별로 이와 관련된 배관 및 부속 공작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다.(제9조제1항)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제2항) 이에 대해 법원은 제2항에 열거된 기준을 모두 입증할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피해의 여러 정황을 입증하는 경우에 인과관계의 추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⁴⁸⁾

판례가 인정하는 개연성이론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⁴⁹⁾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⁵⁰⁾가 있었다. 후자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개연성이론은 실무상 인정되고 있으므로 입법적 효과가 크지 않고 개연성 이론의 법조문화 작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쉽게 인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인과관계 추정 규정이 피해자를 입증책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문제의 시설이 오염배출과 관련이 있다는 점과 배출된 오염물질과 피해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관련이 있다는 점, 배출된 오염물질이 문제된 피해를 발생시키기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는 원고가 ①물질의 배출, ②배출물질의 도달, ③피해의 발생 등을 입증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지만 원고의 입장에서 배출물질의 도달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법원은 이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감정결과에 기대어 도달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환경책임법의 인과관계의 추정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⁵¹⁾ 독일의 환경책임법 규정이 제정 당시의 논의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의 입법자들이 존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정규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시설적합성’에 대한 입증책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⁵²⁾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추정을 배제하는 요건으로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48) 정남철, 앞의 논문, 265면.

49) 전경운, 앞의 논문, 155-156면.

50) 김홍균, 주44), 152면.

51) 김홍균, 앞의 논문, 152면.; 한상운, 앞의 논문, 123면.

52) 최광준, 앞의 논문, 322면.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법 제9조제3항은 위원장 대안의 제9조제3,4,5항을 많은 논의를 거쳐 수정한 것으로 기업의 사기진작과 무과실 책임 인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⁵³⁾

생각건대 위와 같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감안하면 같은 법 제9조제 3항의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기 위한 사업자의 증명이 쉽게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3) 정보청구권

인과관계의 추정을 통하여 입증책임이 완화되어도 피해자는 관련 증거를 수집·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자가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에 관련한 정보의 제공 및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5조 제1항)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9조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제15조제2항)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청구를 받은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나(제15조제3항),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정보제공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제15조 제4항) 그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다.(제15조 제5항)

정보청구권 인정은 가해자의 영업상 비밀이나 제3자의 이익보호와 관련이 있고 정보 제공 또는 열람신청의 남용 등 그 악용의 소지가 없지 않으므로 민감한 문제이다.⁵⁴⁾ 이에 대비하여 정보의 부당 목적 사용을 금지하고(제15조제6항)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었다.(제47조제2항 제1호)

⁵³⁾ 제324회 국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록(2014년4월23일) 6-14면.

⁵⁴⁾ 김홍균, 주44), 157면.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를 다투는 자는 그 결정을 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다퉴 수 있을 것이다.

(4) 환경책임보험가입과 보장계약체결 의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조 제1,2,3,6,7,10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법제17조 1~3항) 대통령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금액은 다음과 같다.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보장 금액
1. 별표 2 가군의 시설		300억원
2. 별표 2 나군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80억원
	소기업 외의 시설	100억원
3. 별표 2 다군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30억원
	소기업 외의 시설	50억원

비고: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은 사업장별로 환경오염피해 한 건마다 위 표의 보장 금액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제47조제2항 제2호)과 법인의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제48조)을 두었다.

(5) 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법제5조에서 “①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환경책임법과 민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기본골격인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다른 특별법이 없는 한 당연히 민법이 적용된다. 환경책임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민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경합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2. 환경정책기본법의 구체화법으로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차례 개정과 관련하여 그 기능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지만, 법체계상 환경법의 기본법으로서 환경정책의 이념과 방향, 국가의 책무, 환경법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⁵⁵⁾ 즉 오염매체별로 규정된 개별 법률들의 기본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법 내용적으로는 원칙상 정책법이고 예외적으로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는 제12조와 특별대책지역에 관한 제38조 등은 규제법 내지 집행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그러한 환경정책기본법의 구체화법으로서 환경오염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시설책임과 위험책임을 규정하고 환경책임보험제도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IV.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의의

환경정책기본법 제42조(분쟁 조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법적 권리 분쟁을 장기간 절차를 요하는 법원이 아닌 다른 방법의 권리구제를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에 따라 환경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

⁵⁵⁾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5. 228면.

정(調停) 및 재정(裁定)의 절차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015.11.30. 국회에서의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 개정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기존의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 외에 중재제도가 추가되고, 환경분쟁의 하나로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이 추가되었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환경오염피해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사무

환경분쟁위원회는 환경부에 설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있다.(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1.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3.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등이다.(제5조)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하고,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제1,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⁵⁶⁾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피해

⁵⁶⁾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의 범위가 넓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의 시설책임도 포함된다. 따라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의 환경피해를 넘는 부분은 환경분쟁조정법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환경오염피해와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환경오염피해는 그 규정내용으로 볼 때 환경분쟁조정법의 환경피해에 포함되고 시설의 설치·운영은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제1호의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포함되므로 환경분쟁조정법의 대상이 된다.⁵⁷⁾ 따라서 피해자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다.(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제1항)

3. 환경오염피해 배상절차와 구제절차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절차와 구제절차를 취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및 환경책임보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가해자인 사업자나 보험자⁵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한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8.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전문개정 2009.7.27.]
- 57) 함태성,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사법」 제26호, 2013. 53-55면.
- 58)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조제5호.

손해배상사건과 같이 운용될 것이다. 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⁵⁹⁾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사건은 당사자 사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법원은 전담부를 두어 처리하면서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물론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담당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게 화해를 권유하고 강제조정을 하나 원고와 피고 중 누구라도 강제조정애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로 선고한다.

만약에 환경오염피해자가 가해자인 사업자나 보험자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재정절차를 밟게 되고 이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만약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절차나 결과가 당사자에게 흡족하지 않다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특히 무과실책임원칙과 인과관계의 추정으로 소송진행이 신속하게 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 할 것이다.⁶⁰⁾ 특히 환경부장관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번호인단을 운영할 수 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42조)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의 피해자는 그 도움을 받아 조정이나 소송을 통한 구제를 받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를 청구할 경우라면 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와 구제

59)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60) 함태성, 앞의 논문.46면.

급여심사위원회 등이 준비된다. 이 과정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무관한 것으로 평가된다.

4.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한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인 사업자나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면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무과실책임 조항과 인과관계의 추정 및 정보청구권 등으로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건보다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배상범위는 2천억 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제7조 단서의 책임한도배제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과실과 중과실의 구분이 명쾌하지 않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중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환경전문기관에 의한 환경피해의 조사와 분석 결과를 얻는 것도 방법이 된다. 배상금액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과와 법원의 판결이나 강제조정 등의 내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⁶¹⁾ 그 기본적인 배상기준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실시되면 보험회사가 사실상 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여하게 될 것이므로 상호 비교를 통한 기준 설정이 형성될 것이다. 생각건대 일단 보험처리를 할 것이므로 일응 배상금액이 상승되고 보험료율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제도안의 부결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대책

2013.11.1. 제출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2015.11.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 중 제45

61) 홍준형, “환경분쟁 재정절차 배상액 현실화 방안”, 「환경법연구」 제33권1호, 2011.25-27면.

조의2(소송지원)안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환경피해를 입은 자에게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및 소송비용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소송지원안은 2015.11.23. 제337회 국회 제7차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삭제되었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위 제도는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제기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법원 판결 전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표현도 부적절하며 특히 피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만 소송지원하는 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되었다.⁶²⁾ 위 정부안은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려는 의도이었으나,⁶³⁾ 당사자사이의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반하는 것이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사인간의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송 대신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운용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의 “판결에충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⁶⁴⁾ 즉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빠른 시간에 환경분쟁을 해결하는데, 그 결론이 법원에서 판결과 유사하다면 피해자는 굳이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분쟁의 사실관계의 확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자연과학적 불확실성문제를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렇지 아니한 법원보다 더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권위를 갖추는 것도 피해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⁶⁵⁾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전문기관에 의한 환경피해의 조사와 분석 결과 등 입증책임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다.⁶⁶⁾ 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62) 강남일,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 2015.11. 5-7면.

63) 함태성, 앞의 논문, 58면 각주27).

64) 조홍식, “환경분쟁조정법의 법정책- 라즈의 권위의 이론에 의존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3호, 2011. 125면.

65) 조홍식, 앞의 논문, 133면.

66) 함태성, 앞의 논문, 58면.

심리 과정에서의 자료 확보와 유사하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소송절차의 사전적인 조정제도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⁶⁷⁾

V. 맺음말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적절한 배상을 위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렵게 제정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시행되고 있다. 환경법학회 회원들의 꾸준한 연구와 국회의 입법에 대한 지원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법의 모델이 된 독일의 환경책임법도 독일에서 오랜 기간 연구를 거친 것으로 미국과 이탈리아 등의 관련법을 참조하였다. 환경책임보험제도와 환경오염피해의 구제급여제도의 시행은 2016.7.1. 이후이지만 기존의 피해구제절차를 획기적으로 변경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책임보험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절차와 유사하게 보험회사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 거기다가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 및 정보청구권의 확립으로 환경분쟁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 예상된다. 배상책임한도가 있지만 보험금 일부의 선지급이 보장되므로 피해자입장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오염피해사건을 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해자가 배상책임한도를 넘는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전문기관에 의한 환경피해의 조사와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낸다면 많은 이용이 있을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16. 3. 17. 심사일 : 2016. 4. 11. 게재확정일 : 2016. 4. 28.

67) 이순자, 앞의 책, 622면.

참고문헌

- 강현호, 「환경국가와 환경법」, 신론사, 2015.
-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4.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5.
- 오석락, 「독일신환경책임법의 특징과 내용」, 대한변호사협회, 1991.
- 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15.
- 이준서,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전경운, 「환경사법론」, 집문당, 2009.
- 조홍식, 「판례환경법」, 박영사, 2012.
- 최봉석,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0.
- 홍준형, 「환경법특강」, 박영사, 2013.
-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한국과 독일의 환경법」,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2013.
- 이르빈 도이취, 김민중역, “독일 환경책임의 이론과 근본원칙”, 「한독법학」, 1991.
- 김현준, “환경책임 및 환경소송의 법체계-한·독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사법」 제26호, 2013.
- 김현준, “환경사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환경법연구」 제32권2호, 2010
- 김형석, “민사적 환경책임”, 「서울대학교법학」 제52권제1호, 2011.
- 김홍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법 연구」 제37권2호, 2015.
- 김홍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한계와 극복”, 「사법」 제26호, 2013.
- 박규용,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손해배상소송과 잠재적 책임위험의 범위”,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39집, 2012.6.
- 서보국, “독일의 환경책임법: 현황, 성과 및 발전방향”, 「환경법과 정책」, 제5권, 강원대학교, 2010.
- 양천수, “전문법의 책임으로서 환경책임과 환경민사책임”, 「환경법연구」 제29권3

호,2007.

윤용석, “환경오염의 민사책임에 관한 새로운 동향”, 「재산법연구」 제11권제1호, 1994.

전경운,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35권2호, 2013.

전경운,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모색”, 「환경법연구」 제36권1호, 2014.

정남철, “새로운 환경책임법제의 도입과 피해자구제절차의 문제점-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7권3호, 2015.

조홍식, “환경분쟁조정제의 법적책- 라즈의 권위의 이론에 의존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3호, 2011.

최명구, “독일환경책임법의 제정시 환경책임의 주요 논쟁과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0권1호, 2008.

최광준, “독일환경책임법의 기본구조와 주요내용”, 「재산법연구」 제21권제2호, 2006.

최병록,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환경법연구」 제29권2호(2),2007.

한상운, “환경책임과 환경보험-환경피해구제법안(2013년7월30일 국회발의)을 중심으로”, 「사법」 제26호, 2013.

함대성,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사법」 제26호,2013.

홍준형, “환경분쟁 제정절차 배상액 현실화 방안”, 「환경법연구」 제33권1호, 2011.

강남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대안) 검토보고”, 2014.12.

강남일,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 2015.11.

김경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69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7.24.

제324회 국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록(2014년4월23일)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완영의원 대표발

의) 검토보고서, 2013.12.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환경책임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4.2.

환경노동위원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대안), 2014.12.

[Abstract]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nd the Environmental Damage Scope in the new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Bae, Byung Ho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Large scale accid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1989, 1997, and 2000 brought us social awareness, so Assembly tried to legislate an Act that breaks up the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and distributes a reasonable liability and makes a prompt relief for damage but failed for various reasons. After that time many scholars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steadily brought up the legislation of new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fter all, this issue was included the election pledge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The present Government decided this issue as a major Government Projects and advanced the acception of an opinion and public hearing. But the new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was made by the form of 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providing the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 with prompt and unbiased relief by establishing an effective system of relief from damage, such as clarifying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easing burden of proof for victims, etc. On the Environmental Liability, Business Owners' No-Fault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the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are prescribed. The Liability Cap for Compensation that limits within a maximum of 200 billion won and the Obligation to Subscribe to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on the Environmental Damage. Where a victim fails to fully or partially receive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for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the Minister of Environment may pay money for relief from environmental damage to the victim or his/her bereaved family members. The following grounds are 1. Where a person who causes environmental damage is

unknown, his/her existence is not obvious or he/she is insolvent; 2. Where the relief money exceeds the liability cap for compensation under Article 7.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which is similar to ours in Germany, the lawsuits were reduced at a considerable width. The lawsuits between the business owners and victim were reduced but the mediation or adjustment between victim and th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were activated. I expect that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will undertake more works on the new Environmental Liability Systems.

주 제 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의 추정, 배상책임의 한도, 환경책임보험제도, 환경오염피해구제.

Key Words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Business Owners' No-Fault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Liability Cap for Compensatio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Relief from Environmental Damage